



한-WIPO 간 국제출원 문서 전자적 교환 확대 실시

특허청과 WIPO간 국제출원 문서의 전자적 교환이 확대된다. 양 기관 간 전자적 문서교환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 9월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WIPO와 국제특허 출원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국제특허 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을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세계 각국 특허청에 보급함으로써 국제특허문서의 전자적 처리 시대를 열기도 하였다.

올 6월부터는 국제특허 출원문서에 이어 국제상표 관련문서도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국제상표제도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따라, 국외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할 때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상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란,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정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10. 7. 기준 82개국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03년 가입하였다.

지난 5월 열린 한·WIPO 고위급 회의에서 양 기관은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시 한국 특허청에서 WIPO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후 총 3,581건의 문서가 전자적으로 송부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2일(수)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련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로 한·WIPO 간 문서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셈이다. 이로써 비용 및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향후 양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도 더욱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눈에 알기 쉬운 '특허 심사절차 안내서비스' 시행

특허청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업재산권 심사절차를 출원인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 안내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출원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서면 출원인들은 출원번호 통지서와 함께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 출원인들은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출원인이 자기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이 어느 심사관에게 배정되었고 심사대기 순서는 몇 번째인지도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8080)로 연락하면 된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출원인들, 특히 출원 경험이 적은 개인 출원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심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심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한국, 지재권 국제사회에 '나눔' 과 '공정' 의 정신 전파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나눔' 과 '공정' 이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나눔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 청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선-후진국 간 갈등임을 감안할 때, 후진국들이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구축한 노하우를 후진국에게 나눠주는 '지식재산 나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허청은 그간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후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기술 보급 사업과 개도국 우수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제공해주는 '1촌 1브랜드' 운동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 간 개발격차해소를 신규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청장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세계 지재권 제도의 조화와 및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를 촉구하였고, 계층간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지식재산 정책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 표준특허, 인터넷으로 한번에 본다!

전 세계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전문포털(www.epcenter.or.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ITU¹⁾, ISO²⁾ 등 주요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표준특허와 MPEG LA³⁾와 같은 주요 특허풀에 가입된 표준특허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작업일정, 표준특허 관련 정책동향과 교육정보 등 표준특허 확보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표준특허란 표준에 채택된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로열티 수입을 확대할 수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특허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외 표준화동향과 특허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내 산학연은 단편적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결과로부터 표준특허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UN산하 전문기구로서,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 제정·보급

2) ISO(국제표준화기구) : 비정부기구로서, 전기전자분야를 제외한 전산업분야 표준 제정·보급

3) MPEG LA : 동영상압축기술 관련 표준특허 라이선스 대행전문업체



특허청, 중남미 국가와의 지재산권 외교 교두보 마련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특허심사,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9. 22(수) 오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과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Maximiliano Santa Cruz Scantlebury) 칠레 특허청장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PCT 국제조사기관 :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PCT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로도 특허획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적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칠레특허청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났다.

*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

같은 날 오전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Jorge de Paula Costa Ávila)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 간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 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허심판 구술심리, 초보자도 문제없다!

특허청은 구술심리에 처음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하면서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등 특허심판품질지표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처음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의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곤 하였다.

기존에도 구술심리 사례별로 진행순서와 시나리오를 기재한 책자형태의 ‘구술심리 매뉴얼’은 있었으나, 활자만으로는 구술심리가 진행되는 심판정의 분위기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구술심리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한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을 통하여, 구술심리 진행에 대한 현실감 있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신규심판관의 구술심리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심판관들도 구술심리 진행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확 바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허청이 주요 지원사업의 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67%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되었으나, 개선된 절차에 의하면 50%가 단축되어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는 것을 보험료 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하였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총 35종류를 폐지하였다. 입찰과 계약 시에 중복되는 서류는 입찰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지원 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바로 적용하고,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공 특허청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경영: 지재권이 경영자원으로 창출·활용되고 지재권 리스크가 경영 차원에서 관리되어 기업의 경영전략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

9월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충청특허법률사무소
- 대 표 자 : 성정현
- 업태/종목 : 서비스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6층
- 전화번호 : 02-772-2370
- 홈페이지주소 : www.hmplaw.com